

데이터의 과세방안에 관한 소고*

유호림**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세원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 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여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현행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취득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의 범주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98조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과세방법을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과세가능성과 구체적 과세방안을 검토한 후 ‘데이터보유세’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 데이터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데이터를 거래세로 과세하는 경우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전체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금액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지방세이자 보유세인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데이터를 재산세로 과세하는 경우 데이터의 무체성·복제가능성·결합가능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간 과세권의 확정이 곤란해지며,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현행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일반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창출능력 및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강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전공 교수, liuhulin@naver.com

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과 과세대상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의 과정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는바, 이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국외 플랫폼기업의 세원관리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데이터, 데이터세, 플랫폼세, 디지털세, 데이터보유세

I. 서 론

사전적 의미에서 데이터경제는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하는데,¹⁾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공공정보 및 민간정보 등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공하여 생성된 부가가치가 있는 새로운 재화로서, 다른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다른 기술 또는 정보와 쉽게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경제는 일견 디지털경제나 플랫폼경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되지만, ‘경제’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경제·디지털경제·플랫폼경제를 비교하면 이들은 각각 상호 보완적이거나 응용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 즉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경제와 플랫폼경제는 결국 ‘데이터’를 매개로 출현하여 발전해 오면서 실물경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다른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왔다는 점에서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경제 및 플랫폼경제는 상호 보완적 또는 응용적 관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경제와 플랫폼경제는 결국 그 핵심 매개체인 ‘데이터’에 내재하는 본질적 특수성(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 발현되면서 형성된 경제로 볼 수 있는바, 이는 데이터가 그 자체로써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자 디지털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경제의 핵심

1) 네이버의 IT사전을 참조하였다(<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2346&categoryId=42346>)(검색일 : 2020.04.04.).

2) 이른바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가리키며, 플랫폼경제란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 등 핵심 인프라·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경제의 경우 인터넷 등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형태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며, 플랫폼경제는 현실세계에서 생성된 각종 정보를 가공하여 창출한 데이터를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면서 현실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라는 점에서 데이터경제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다만, 디지털경제이든 플랫폼경제이든 모두 현실 세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자산으로 전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과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되는 데이터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발전을 견인했던 원유나 석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나 생산요소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경제 및 플랫폼경제 등 새로운 경제체제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자원 또는 생산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Gartner(2011)는 데이터경제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닌 빅데이터나 오픈 데이터 또는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경제’라고 정의하였으며, 구본승(2019)은 ‘데이터경제’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통, 활용 등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화와 용역의 질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데이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를 구성함과 동시에 디지털경제 및 플랫폼경제 등 새로운 경제체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자산이자 재화로도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EU와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4월 20일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본법」이라 함)을 시행하여 데이터산업 및 데이터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데이터를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되어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는 ‘취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자산’으로 볼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 데이터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데이터는 외관상 ‘부가가치가 창출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무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가공이나 처리를 통하여 다른 데이터와 자유로이 결합하거나 분리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증가하거나 전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사업활동에 투입하더라도 상각되거나 소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매우 강력하고 영구적인 수익창출능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과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특징도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다른 자산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자산으로서 강력하고 영구적인 수익창출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경제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거

나 매개하는 특성이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조세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에는 매우 강력한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의나 과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초과수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로 인해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데이터가 그 자체로 강력한 담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나 소비과세 또는 보유과세 그 무엇에도 과세대상에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³⁾

이밖에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 및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경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경제체제가 데이터를 매개체로 하는 디지털경제와 플랫폼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촉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라는 감염병의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후퇴를 방어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및 세계 각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산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초과수익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자산으로서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 세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과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I 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논의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제 II 장에서는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일반론과 데이터가 갖는 경제적·법률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과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III 장에서는 데이터의 생성과정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데이터세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각각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및 보유과세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장단점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IV 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인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안 등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3) 2022년 4월 22일 시행된 「데이터기본법」에서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이용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데이터가 우리나라 「민법」상 물건에 포함되는지 또는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II. 데이터의 일반론 및 과세 필요성

1. 데이터의 정의와 개념

일반적으로 데이터(data)란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값 또는 사람이나 자동기기가 생성하거나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을 뜻한다. 즉 어떠한 사실, 개념, 명령 혹은 과학적 실험이나 관측의 결과로 얻어진 수치나 정상적인 값으로 표현된 실체의 속성을 숫자나 문자 또는 기호 등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⁴⁾ 그러나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인간 또는 컴퓨터를 비롯한 자동 기기에 의해 행해지는 통신과 해석 및 처리로 형식화된 사실과 개념 또는 명령을 표현한 것을 데이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 자체는 단순히 어떠한 실체의 특징 등을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숫자 등으로 표현해낸 사실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한편 우리나라의 「데이터기본법」에서는 데이터를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되어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⁶⁾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를 입수하면 그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의 정보’⁷⁾ 및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및 전자매체 등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주로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각종 행정정보’를 의미하는바, 이에 따르면 「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공공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진다.⁸⁾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는 ‘취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특정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법」상 물건으로서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데이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자적 성격의 물건 또는 재화’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441&cid=40942&categoryId=32840>(검색일 : 2020.04.04.).

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65153&cid=42346&categoryId=42346>(검색일 : 2022.04.04.).

6) 데이터기본법 제2조 제1호~제3호.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8)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만 규정하였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그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만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⁹⁾ 「데이터기본법」에서는 데이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자적 성격의 재화’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미비 또는 흠결로 인하여 데이터가 「민법」상 소유나 거래의 대상인 물건의 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따라서 데이터 그 자체는 어떠한 실체의 특징 등을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숫자 등으로 표현해 낸 사실에 불과할 뿐 경제적 부가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민법」상 물건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데이터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및 그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건대, 데이터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자적 성격의 물건(또는 재화)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또는 공공정보, 이하 ‘공공정보’라 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데이터의 특수성

데이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자적 성격의 재화’로서 개인정보와 각종 공공정보를

9) 민법 제98조, 제99조, 제211조.

10) 즉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데이터를 물건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의 정의에 대하여는 단지 상술한 「데이터기본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데이터기본법」의 정의에 따르자면 데이터는 명확히 ‘물건 또는 재화’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데이터는 결국 개인정보와 공공정보 및 민간에서 생성된 각종 정보에 기초하여 일정한 '가공 또는 처리'를 통하여 부가가치(또는 경제적 가치, 이하 '부가가치'라 함)가 생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데이터는 개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나 공공정보 또는 민간정보를 축적한 후 반드시 일정한 '가공 또는 처리' 절차를 거쳐야만 부가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만이 시장에서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떠한 데이터가 개인이 제공한 공공정보 또는 민간정보가 축적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일지라도 이에 대하여 일정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또한 데이터로서의 외관을 갖추고는 있지만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한 단순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이전 단계로서 어떠한 실체의 특징을 전자적으로 표현해낸 단순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와 이에 대한 '가공 또는 처리'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창출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데이터를 과세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는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터에 대하여 '가공 또는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무형자산에 속할 뿐 아니라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담세력이 생성되는 시기와 담세력을 표창하는 세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와 단순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은 데이터가 「민법」상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개인의 인격권에 속하여 자연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가공 및 처리를 통해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과정 및 이른바 플랫폼기업 등이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시장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준모(2019)는 정보의 층위분석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준모(2019)는 일정한 가공 또는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격권의 일종인 '의미론적 정보'로 보았으나, 이를 1차적으로 가공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는 '구문론적 정보'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구문론적 정보'를 최종적으로 표시나 기호 등을 통해 구조화하여 일정한 유형물의 형태로 보관한 정보를 '구조적 정보'라고 구분하였다. 다만 어떠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가 '구문론적 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부가가치가 생성된 것은 아니라, 그 데이터가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장치를 통해 즉각 처리가 가능한 상태로써 전송이나 복

제 또는 추가적인 기계적 처리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부가가치가 생성되어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컨대 강준모(2019)는 데이터의 기초 구성요소인 개인정보는 비록 그 외관이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 보인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가공이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인격권에 속하는 의미론적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에 대하여 일정한 가공이나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생성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구문론적 정보 또는 구조화된 유형의 정보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유와 거래의 대상인 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터를 『민법』상 ‘소유와 거래’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는 그 데이터의 외관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 내용이 ‘구문론적 정보’ 또는 ‘구조적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데이터는 공유가 용이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복적인 가공 또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특징도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지원(2019)과 이동진(2018) 등은 본질적으로 데이터가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데이터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자적 수단(즉 가공 또는 처리 등)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상각되거나 소모되지 아니하며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전자적 정보’와 반복적으로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데이터는 무체성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뿐더러 법률적으로는 물리적인 지배나 점유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복제가능성으로 인하여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양립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비경합성과 특정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및 사용자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데이터에 내포되어 있는 영속성과 복제가능성의 경우 데이터가 기타의 자산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수익창출능력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유형의 자산이든 무형의 자산이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모되거나 상각될 수밖에 없지만 데이터의 경우 소모되거나 상각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되면 다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구조적 정보로서의 데이터인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는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반복적인 가공이나 처리를 통하여 다른 구조적 정보로서의 데이터와 자유로이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생성되기 때문에 상각되거나 소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매우 강력하고 영구적인 수익창출능력이 발현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가치가 시

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3. 데이터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데이터기본법」¹¹⁾과 「개인정보보호법」¹²⁾ 및 「정보공개법」¹³⁾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망법」¹⁴⁾과 「신용정보법」¹⁵⁾등의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즉 2020년에는 데이터 관련 중추적인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이하, 「데이

- 11) 「데이터기본법」은 2021.10.19.에 법률 제18475호로 제정되었으며 2022.04.20.부터 시행된다. 동법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에 대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에서는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제Ⅱ장)과 데이터 이용활성화(제Ⅲ장) 및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제Ⅳ장), 데이터 산업 기반조성(제Ⅴ장)과 분쟁조정(제Ⅵ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12) 「개인정보보호법」은 2014.03.24.에 법률 제16930호로 제정되었으며 2020.02.04.에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 취지에서는 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바, 2020.02.04.의 개정을 통하여 공익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 13) 「정보공개법」은 1996.12.31.에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어 1998.01.01.에 시행되었으며 2020.12.22.에 대폭 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12.22.의 개정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 14) 「정보통신망법」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86.05.12.에 제정되었으며(법률 제3848호), 1999.02.08.에 법률 제5835호로 전부 개정되었다가 법률 제18201호로 2021.06.08.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법 제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2021.06.08.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감독기구도 일원화하는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 15) 「신용정보법」은 1995.01.05.에 제정되었으며(법률 제4866호) 2020.02.04.에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법률 제16957호).

터3법'이라 함)이 모두 개정되었는바, 과거 데이터3법에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 관련 유사 규정들을 정비하고 통합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에서는 각각 정보통신 관련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도록 하거나(「정보통신망법」)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법률체계를 완비하였다(「신용정보법」).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데이터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핵심개념인 데이터의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데이터기본법」에서 데이터를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되어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즉 「데이터기본법」등 데이터3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해석상으로는 데이터가 「민법」상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범위에 대하여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그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물건에 해당한다면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 관련 「민법」의 입법상 흠결은 결국 데이터가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아니라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인격권으로 오인되는 상황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⁶⁾

그런데 독일의 민법(제90조)에서는 물건을 유체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정보로 변환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데이터는 물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위스 민법(제713조) 또한 민법상 동산을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유체물과 법적 지배하의 부동산이외의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스트리아 민법(제285조)에서는 사람이 이용 가능한 사람 이외의 것을 모두 물건으로 규정하고

16) 법무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2022.04.05.)에서는 데이터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개인정보를 인격권에 포함하여 민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방안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처럼 개인정보를 인격권에 포함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자연인의 경우 자신의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사용권을 허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만일 그러한 개인정보를 ‘가공 또는 처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즉 구조적 정보)’로 전환한다면, 「데이터기본법」등 데이터3법에 의해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 바뀌면서 그 법적 성격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인격권도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터로 전환되면 소유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된다.

있으므로 데이터 역시 물건이자 동산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¹⁷⁾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조적 정보로 변환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인 데이터는 관련 법률인 「데이터기본법」 등에 의해 「민법」상 물건과 동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법」의 흠결로 인하여 물건에 포함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데이터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가 「민법」상 법률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¹⁸⁾

따라서 데이터가 「민법」상 법률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우선 데이터를 단순한 의미적 정보로 구성된 개인 정보의 집합체와 그에 대한 가공 또는 처리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구조적 정보로 구성된 집합체로 구분한 후, 전자의 경우 권리의 주체이자 일신전속권인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선명하므로 「민법」에 인격권의 일부로 입법하고 후자는 이미 가공 또는 처리의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물건의 성격이 뚜렷하므로 「민법」상 소유와 거래의 대상인 물건으로 입법한다면, 데이터 관련 「민법」 규정의 흠결로 인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4. 신(新) 세원으로서 데이터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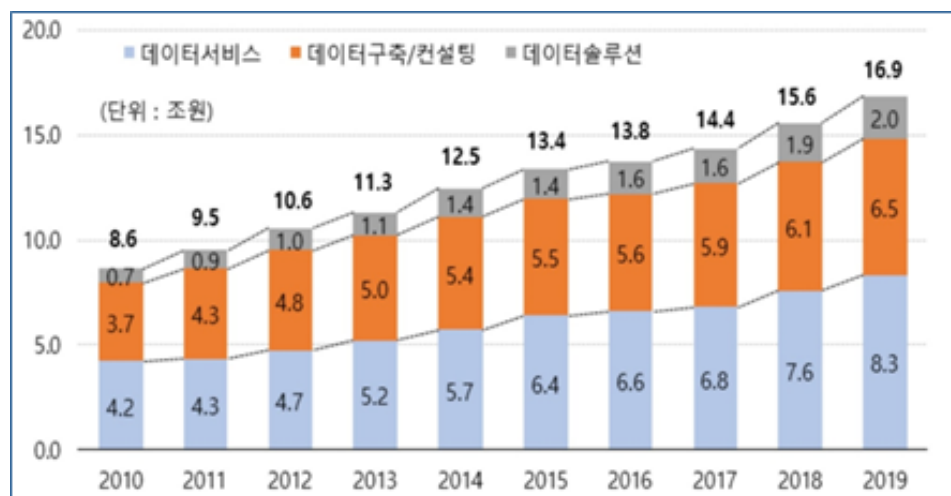
데이터는 새로운 자본이자 재화 및 서비스에 필요한 저장정보로서 기존의 물리적 자산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MIT 2016). 실제로 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데이터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장을 데이터 경제라고 한다. 예컨대 Gartner(2011)는 이른바 데이터경제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닌 빅데이터나 오픈데이터 또는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경제’라고 정의하였으며, 구본승(2019)은 데이터경제를 ‘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통, 활용 등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화와 용역의 질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이터경제의 정의와 전술한 데이터의 법률적·경제적 특징을 고려하면, 데이터경제는 ‘어떠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人”이 다른 “人”의 생애를 통하여 생산한 개인정보 등을 영리목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각 시장의 참여자에게 공급하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17) 특히 강준모 등(2019)은 물건의 개념은 자연적인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하는 물건이라는 권리의 대상으로서의 규범적 의미이고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성과 유연성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기술적 또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8)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는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행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김세연의원 대표입법발의, 의안번호 : 202386.2019.11.18.).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서비스나 데이터컨설팅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규모는 약 1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데이터서비스(8.3조원)와 데이터구축 및 컨설팅(6.5조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솔루션(2조원)은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아래의 <표 1> 참조).

<표 1> 데이터산업 현황조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다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통계는 ‘데이터산업’에만 국한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를 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플랫폼기업 등이 데이터로부터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각종 플랫폼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 및 데이터로부터 파생되었거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등을 합산한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및 데이터경제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¹⁹⁾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데이터에만 내재하는 ‘무체성 · 복제가능성 · 영속성 · 결합가능성’ 등 본연적 특수성

19) 예컨대, Wikibon(2018)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019년에 이미 49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이후에도 급속한 성장추세를 유지하여 2026년경에는 약 9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20년 현재 미국의 플랫폼기업인 MAFAA(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랫폼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2021년 7월 현재 각각 약 70조원과 약 65조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기업의 기업가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배제하고 단지 플랫폼기업 등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그러한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로만 과세하고 있을 뿐이다. 즉 데이터에 내포되어 특수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담세력이나 그로 인해 나타나는 초과수익에 대하여 별도로 측정하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창출한 소득 또는 그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나 부가가치세로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에서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특수한 담세력(즉 일반적 재화와 차별되어 초과수익능력을 내포하고 있는 담세력)을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빅테크 기업 등 각종 플랫폼기업이 사실상 무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도 적절히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공지능에 기반한 데이터경제의 발전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응용되면서 인간 능력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규모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실물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결국 기술과 자본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지대추구체제의 구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진전된다면 인간의 노동력이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자연인으로서 인간의 기본권(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인간의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플랫폼 경제는 약탈적 독과점을 촉진하고 노동의 시장소외를 가속화하여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²⁰⁾

최근에는 데이터가 개인(공공)정보에 기반한 기본적 생산요소로서 상각되지 아니하는 무형의 자산이자 사회적 자본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하여 데이터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신언(2020)은 데이터세를 신설하여 데이터의 기본 구성요소인 원시데이터(즉 개인정보 등)를 제공한 개인에게 데이터세 세수입을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경기연구원(2020)은 국가(지자체)에서 보관중인 개인정보(공공정보) 판매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한 후 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실험을 실제로 단행한 바 있다.

정리하면 데이터는 ① 그 자체로 담세력이 있는 민법상 물건의 속성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② 개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원시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가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며 ③ 플랫폼 기업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막대한 초과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④ 그러한 과정에서 원시정보를 제공한 개인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섭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과세체계나 법률 규정 등은 불비되어

20) 예컨대 캐나다의 Guy Standing(2017)은 데이터와 그에 기반한 플랫폼기업이 독과점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저임금 독립사업자(프리캐리아트)’와 ‘독과점 플랫폼 중심의 지대추구자’ 간에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2년 4월 시행된 「데이터기본법」 제1조에서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입법 취지를 밝히면서,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제2장)과 데이터 이용활성화(제3장) 및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제4장), 데이터 산업 기반조성(제5장)과 분쟁조정(제6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세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데이터를 데이터의 보유와 거래 및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데이터에는 과세대상인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무한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의 기본 구성요소인 개인정보 등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상 무상으로 플랫폼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이른바 ‘프레카리아트’로 불리는 플랫폼기업에 종속된 저소득 독립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및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세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입법방안의 연구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Ⅲ. 데이터의 과세방안에 관한 고찰

1. 데이터의 생성 과정

데이터에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데이터를 과세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생성과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인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이러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는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한 단순 정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데이터기본법」에 따르면 데이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되어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에 포섭될 수 있는 데이터가 개인의 정보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가공된 개인정보 등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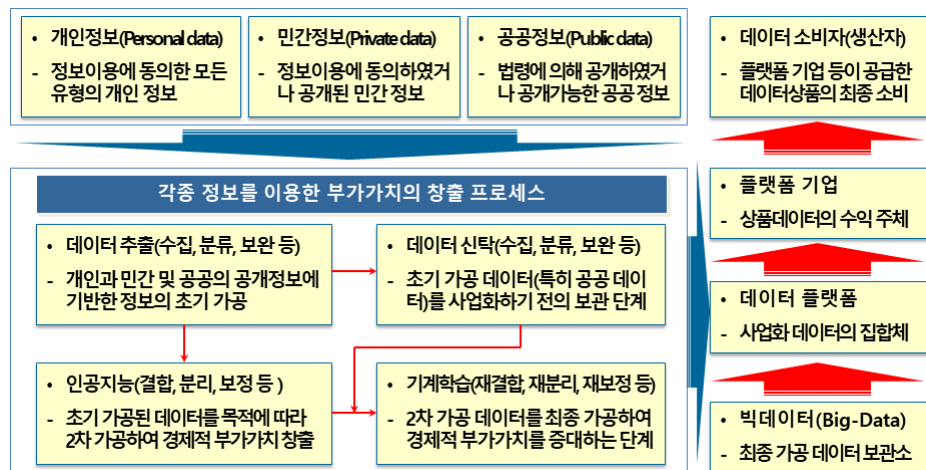
21) 데이터기본법 제2조 제1호~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한편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인 데이터는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하, ‘데이터사업자’라 함)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개인정보와 공공정보 및 민간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함)를 수집하여 저장한 후, 이를 다시 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인격권에 속하는 개인정보가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다만 데이터사업자가 포털사업이나 플랫폼사업 등 데이터를 주요 상품(제품)의 원재료 또는 주요 용역의 공급에 직접 이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다가 영리목적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데이터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의 원천인 개인정보 등을 외부매입한 경우와 자가생성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데이터를 데이터세로 과세하든 아니면 기존의 과세체계에 포섭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으로 과세하든 그 취득원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데이터의 기본 구성요소인 개인정보 등을 가공 또는 처리하여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일정한 경로에 따라 그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영리목적 등으로 공급 또는 양도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데이터세는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관과 유통 및 처분이라는 각 단계에서 세율을 파악하여 각각 데이터의 보유과세나 거래과세 또는 소득과세 등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개인정보 등이 가공 및 처리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로 전환되고 데이터사업자 등의 수익사업에 이용되는 단계를 흐름도로 정리하면 대략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과세대상 데이터의 부가가치 창출 프로세스



* 출처 : 『데이터기본법』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직접 작성

2. 데이터세 세원에 대한 검토

데이터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생성과정에 따르면 데이터는 결국 데이터의 기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데이터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처리 또는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요약되며, 데이터사업자는 이처럼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기사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기타의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면서 그러한 데이터가 중간재로 이용되거나 투입되지 아니한 기타의 재화나 용역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이하, ‘초과수익’이라 함)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즉 데이터는 개인정보 등이 데이터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따라 ‘수집과 추출 → 결합 및 가공 → 재결합 및 재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인격권적 정보에 불과하던 개인정보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구조화된 유형의 정보이자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재화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과세대상의 범위 내에 포섭하기 위하여는 사실상 데이터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가공 및 처리를 통해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가 생성된 데이터는 제3의 데이터사업자에게 원재료나 반제품 또는 부분품 등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 상품이나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를 제공하는데 투입되거나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관하거나 재결합 또는 재분리라는 과정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하거나 전혀 다른 부가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데이터에 내재하는 무체성·영속성·복제가능성·결합가능성 등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데이터는 그 본질적 특수성으로 인해 양태와 성질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부가가치의 생성시기 또는 금액이나 크기 등을 측정하는 것이 곤란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현재의 과세체계나 과세기법 및 세법규정으로 데이터를 신(新)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되지 아니한 개인정보 등이 가공과 처리 및 결합과 분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체계에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데이터를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사업자가 사실상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에 기반한 데이터를 사유화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²²⁾

22) 물론, 플랫폼사업자 등 데이터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면, 일정 수준의 관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일부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권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가로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일종의 양도행위로 의제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데이터의 세원을 파악하여 현행 과세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개인의 인격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와 부가가치가 생성된 데이터를 각각 구분하여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처럼 민법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인격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이러한 개인정보를 가공하거나 결합 또는 분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생성된 데이터를 민법 제98조에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전자적 정보(데이터)”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³⁾

만일 전술한 것처럼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데이터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법적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는바, 개인정보는 인격권에 포함되므로 거래의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데이터는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법률관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보유, 부가가치, 이윤 등)을 세원으로 포착하여 과세체계에 포섭하거나 데이터세라는 새로운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또한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법」상 물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기본법」에서도 데이터를 ‘데이터상품’ 또는 ‘데이터자산’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²⁵⁾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 데이터에 대한 개념정의나 과세규정이 미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민법」 또는 「데이터기본법」의 규정을 차용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별도의 ‘데이터세’라는 세목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데이터에 본연하는 특징과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발현되는 초과수익력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데이터세 세원 관리 방안

전술한 것처럼 데이터는 인격권에 속하는 개인정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경제적 부가가

23) 다만 2022.04.05.에 발표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3조의2로 인격권을 신설하면서 인격권의 범위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데이터에 대하여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즉,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서도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전술한바 있으므로 추가로 언급하지 않는다.

24) 예컨대 데이터의 보유에 대하여는 데이터보유세로 과세하고 데이터의 공급에 대하여는 데이터거래세로 과세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처분으로 인해 수취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데이터이윤세 등으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25) 데이터기본법 제9조 제1항, 데이터기본법 제12조 제1항.

치가 창출된 민법상 물건의 일종에 속하므로 마땅히 과세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관련 법령의 미비 또는 과세기술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들은 개인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등 가공·처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후, 이를 영리목적 사업활동에 투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즉, 초과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구조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각각 구분하여 민법에 입법한다는 전제하에 데이터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하거나 데이터의 보유와 거래 및 처분에 대한 과세(즉, 보유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가 가능해질 것이지만, 데이터의 본질적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주도의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플랫폼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후, ‘정부주도의 빅데이터센터’ 또는 플랫폼사업자 등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생성과 거래 및 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를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연동하도록 하거나, 데이터세 관련 과세자료 등이 자동으로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에 제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세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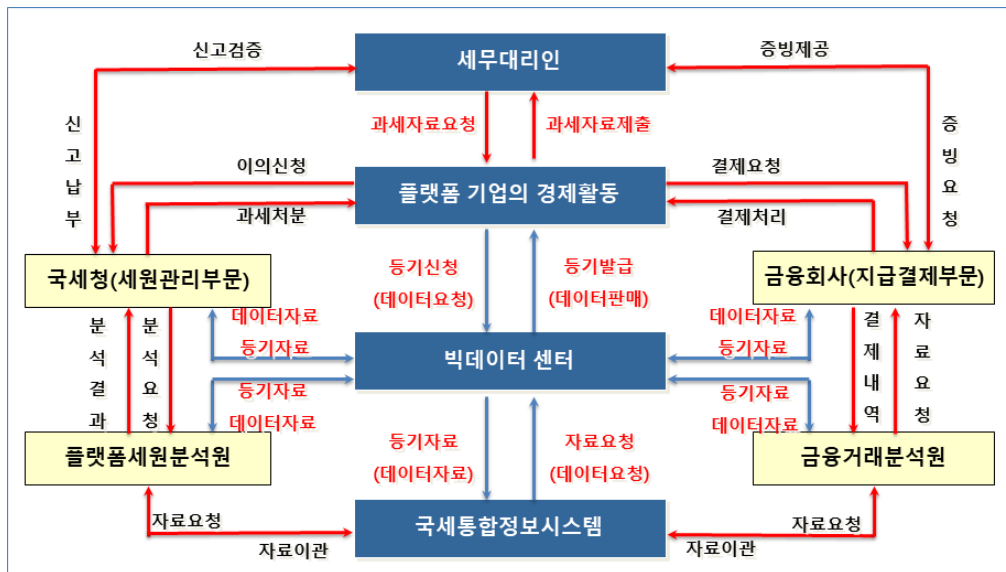
즉 데이터세 등으로 과세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원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부주도의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데이터센터를 의무화하여 관련 데이터 등을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에 연동시키는 ‘데이터세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혹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주된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와 가공한 데이터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국내에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하거나 관련 세원을 관리하는 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빅데이터센터’ 및 이에 기반한 ‘데이터세 세원관리시스템’은 2022년 현재 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빅데이터센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는 주로 납세자가 신고한 역년 과세자료와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 기초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거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생성과 부가가치의 창출 과정을 통제(또는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의미한다.

이는 일견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데이터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혹은

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 ‘공공정보 혹은 공공데이터의 플랫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주도 빅데이터센터’와는 역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상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주도 빅데이터센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데이터세 시행을 위한 세원관리시스템 개요



* 출처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및 데이터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직접 작성

26)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포스트(<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06399&memberNo=4795084&vType=VERTICAL>)를 참고하였으며, ‘디지털 뉴딜 정책’과 ‘데이터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 홈페이지(<https://digital.go.kr/front/promotion/policyList.do>)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요컨대 국세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는 주로 납세자의 납세신고자료와 금융거래자료 등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일종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에 포섭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그 흐름을 분석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빅데이터센터로 볼 수 없으며,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이터담 또한 공공정보나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등을 1차적으로 가공하여 데이터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역시 데이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통제(혹은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주도 빅데이터센터’와는 그 기능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4. 데이터세 과세 방안 고찰

가. 소득과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하는 방안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법」상 물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기본법」에서도 데이터를 ‘데이터상품’ 또는 ‘데이터자산’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²⁷⁾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통상의 이익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개념으로 ‘데이터이익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²⁸⁾²⁹⁾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취득가액이나 2차(3차) 가공원가 등은 관련 비용이나 원가로 보아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창출한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27) 데이터기본법 제9조 제1항, 데이터기본법 제12조 제1항.

28) 통상의 이익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최근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부과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매출액의 10%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9) 현행 「데이터기본법」 제14조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통상의 이익 수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가치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현행 각 개별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이전가격규정 등 자산가치나 소득금액에 대한 다양한 세법상의 산정방법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4조(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일 과세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그 데이터를 자가수집하거나 자가가공한 경우에는 비용 또는 원가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취득원가 산정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데이터이윤세의 과세표준은 결국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대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소득금액에서 당해 데이터의 취득가액(또는 가공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처럼 데이터세를 초과이윤에 대한 법인세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는 때에는 당연히 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기타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는 소득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되, 납세자의 주된 사업과 데이터의 사용목적 및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초과수익력을 측정하여 기타의 경영활동을 통해 획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컨대 일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하여는 고세율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소비과세(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로 과세하는 방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민법」에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민법」 제94조의 물건의 정의에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념 및 정의를 「민법」이나 「데이터기본법」으로부터 차용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행 「데이터기본법」에서 데이터를 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품 또는 자산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의 거래에 대하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데이터기본법」상 데이터에 속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 등을 사업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처럼 데이터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등 기존의 거래세 과세체계에 포함시킨다면 별도의 데이터거래세를 입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공급하는 데이터의 초과수익력이 일반적인 데이터의 기대수익(즉 통상의 이익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하거나(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구조가 다단계 복수세율구조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다단계 복수세율구조를 적용한다면 EU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를 참고하여 일반세율(일반 데이터)과 고세율(초과수익 데이터), 면세(비사업용 데이터), 영세(기초재 또는 비영리용 데이터)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취득가액(혹은 가공원가)를 매입가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적용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역시 초과수익력을 보유한 데이터 및 자가수집하여 자가가공한 데이터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이 관건이 될 수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상의 이익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데이터의 공급 또는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사업자가 될 것이다.

다. 보유과세(데이터 보유세)로 과세하는 방안

데이터 사업자 등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거나 거래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데이터 보유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우리나라의 「민법」 또는 「데이터기본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는 자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에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가공 또는 처리하여 보유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자체에 내재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보유세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응당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데이터 등 전자적 정보의 보유자로 하며 과세표준은 외부로부터 매입한 데이터의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의 취득 이후 추가의 가공 또는 처리를 통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제고한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공 또는 처리하여 생성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소득과세나 거래과세와 마찬가지로 그 가공과정에서 투입한 추가 가공비용 또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가공비용 등을 데이터 보유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거나 과세표준으로 의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데이터 보유세 또한 보유세의 기본적 특성에 따르기 때문에 과세대상 데이터의 사용목적이나 영리유무에 따라 비과세나 면세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데이터에 내재하는 초과수익력의 크기에 따라 일반세율과 고세율 및 누진세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기대수익이 통상적 이익수준이라면 재산세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그 사용목적이나 영리유무에 따라 고세율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만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기대수익이 통상의 이익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일정한 과세구간을 설정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처럼 데이터 보유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통상의 이익수준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과세방법이나 세율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요약 및 소결 - 데이터세 과세 방안의 선택

전술한 것처럼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민법」상 물건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된 자산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논리를 긍정한다면 데이터는 ‘데이터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과세체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데이터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없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가공 또는 결합 및 분리’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된 「민법」 물건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민법」상 물건 혹은 자산의 취득과 보유 및 거래와 처분에 관한 현행 세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과세대상 물건으로 포착하여 보유세나 거래세 또는 소득세 등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데이터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① 데이터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로 과세하는 방법, ② 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초과이윤에 대한 법인세’의 개념으로 과세하는 방법, ③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 보유세’로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데이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거래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나 「민법」에서는 모두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물건에 관한 「민법」 제94조를 개정하여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 또는 ‘데이터’ 등을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추가한다면, 굳이 ‘데이터세’라는 별도의 세목을 설치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로 과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이처럼 「민법」을 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공평의 달성이나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고세율로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무형의 재화인 데이터는 전자적 장치나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 및 통제 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을 통해 수시로 결합 또는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데이터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빠르게 생성되거나 변화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각각의 거래단계를 즉각적으로 포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 모두 과도하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거래세로 데이터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 조세 부담이 데이터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데이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를 과세한다면 조세수입은 안정적이고 큰 폭으로 증가하겠지만, 그에 따른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및 데이터

세 조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거래세 과세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등 소득과세의 형태로 데이터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거래세로 데이터에 대해 과세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본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도 사실상 데이터를 ‘경제적 효익을 갖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⁰⁾ 이는 무엇보다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초과수익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일 데이터에 ‘초과수익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데이터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성된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단순한 ‘전자적 정보의 저장물’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사업활동에 투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월등히 우월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만일 데이터를 사업활동에 투입하여 창출한 ‘초과수익’과 그렇지 아니한 ‘일반수익’을 구분할 수 있다면 데이터가 투입되어 창출된 ‘초과수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이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디지털세’의 개념으로 ‘데이터이윤’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데이터의 투입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그에 따른 초과수익의 산정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데이터세(즉, 데이터이윤세)의 과세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다. 사업활동에 대한 투입여부는 <그림 2>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주도의 빅데이터센터’와 국세청의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세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상호대사 및 상호검증 과정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연히 그러한 상호대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가 투입되어 나타나는 ‘초과수익’ 및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처럼 데이터세를 데이터의 투입에 의해 창출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성격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는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초과수익’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혹은 데이터자산)를 과세정보로 삼게 되므로 영업기밀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세를 ‘초과수익에 대한 법인세(즉, 데이터이윤세)’의 형태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문제 및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가능성 등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법인세의 과세체계에 포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과세대상으로 하

30) 다만 현행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인식방법이나 회계처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실무상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방법과 상각여부 및 가치평가 등에 대한 회계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여 ‘재산세 등 보유세’로 과세하는 방법은 그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물건이자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데이터 그 자체에 이미 충분한 담세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그 본질적 특징인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물건이나 자산과는 달리 사업활동에 투입하더라도 상각 또는 소모되지 아니하며, 반복적인 ‘복제와 결합 및 분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부가가치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넓고 안정적인 과세물건을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아도, 데이터는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고갈되지 아니하는 매우 특수한 성질의 보유세 세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내지 자산으로 보아 보유세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선 데이터에 대한 「민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데이터를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으로서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데이터기본법」에서 데이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기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 데이터를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취득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제2조), 데이터는 생산하여 상품화 할 수 있으며(제9조) 데이터자산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제1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물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데이터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하기 전이라도 세법상 데이터를 보유세의 과세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데이터를 보유세로 과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데이터를 세법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방세로 과세하게 되면 데이터의 기본 속성 중 무체성과 복제가능성 및 결합가능성으로 인해 과세권을 확정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대체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기본원리인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보유과세의 대상으로 보아 ‘보유세’로 과세한다면 반드시 국세로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데이터보유세’의 과세로 인한 세수입은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처럼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처럼 ‘데이터보유세’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플랫폼기업 등 전문적인 데이터사업자와 일반적인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거의 전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플랫폼기업이나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나 사업자

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초과수익력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플랫폼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업이나 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데이터보유세’의 세율구조는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초과수익력 또는 과세대상 사업자의 주된 사업의 유형과 당해 사업자의 자산이나 수익에서 데이터가 차지하거나 기여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세율 구조를 선택한다면 ‘데이터보유세’ 납세의무자들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면서도 안정적인 세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데이터세는 ‘데이터보유세’로 세목을 신설하여 국세로 과세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하며,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창출능력 또는 과세대상 사업자 등의 주된 사업활동 및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세율로 설정하는 하는 방안이 실현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데이터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나 상각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의 대상이 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통, 활용 등의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주도의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거나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데이터센터를 의무화하여 관련 데이터 등을 ‘국세청의 빅데이터센터’에 연동시키는 ‘데이터세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혹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21세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경제와 플랫폼경제는 그 핵심 매개체인 ‘데이터’에 내재하는 본질적 특수성이 발현되면서 형성된 경제를 의미한다. 이는 데이터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로서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다른 자산과 차별되는 본질적인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로 인해 데이터는 그 자체로써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자 디지털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자적 수단(즉 가공 또는 처리 등)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복제가 가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상각되거나 소모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이라는 특수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기타의 ‘전자적 정보’와 반복적으로 결합하거나 분리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초과수익’이 창출되어 데이터 자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다른 재화나 서비스 또는 산업의 발전까지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기술과 산업 및 경제의 발전은 현실경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경제와 산업 구조의 쇠락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노동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촉진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라는 감염병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경기후퇴를 방어하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및 세계 각국의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산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초과수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자산이며 사실상 무한한 담세력이 내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新) 세원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 후, 데이터의 과세방안 및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등을 모색하여 아래와 같이 ‘데이터보유세’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존의 과세체계에서 데이터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데이터를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98조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에 관하여도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그 이외의 물건을 동산’으로만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데이터가 「데이터기본법」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며 취득가능한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과세물건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일 「민법」 제98조의 물건의 범위에 ‘부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정보의 집합체’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데이터는 당연히 법률상 취득과 보유 및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므로, 그 각각의 단계에 따라 거래과세(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와 보유과세(재산세 등) 및 소득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범위에 포섭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거래과세와 보유과세 및 소득과세로 나누어 그 과세가 능력과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과세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거래세로 과세하거나 법인세나 소득세 등 소득과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거래세로 과세하는 경우 데이터의 본질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조

세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한다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데이터 관련 과세소득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시행예정인 디지털세와의 중복과세로 인한 문제로 인해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하여 보유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것처럼 데이터가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그 법적 지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취득과 보유 및 거래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므로 현행 과세체계에서도 충분히 보유세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에 대하여 가장 손쉽게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현행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처럼 지방세인 재산세로 과세하게 되면 데이터의 기본 속성 중 무체성과 복제가능성 및 결합가능성으로 인해 과세권을 확정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경우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기본원리인 ‘세원의 보편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보유세’라는 세목을 국세로서 신설하되 그 세수입의 일정 비율은 현행 지방소득세(지방법인세)나 지방소비세처럼 지방정부에 배분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또는 청년기본소득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목적세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과세대상 플랫폼기업 등 데이터사업자와 기타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데이터의 보유량이나 수익창출능력 또는 과세대상 사업자 등의 주된 사업활동 및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익창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세율로 설정하는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다만 데이터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나 상각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무체성·복제가능성·영속성·결합가능성’이라는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의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 설립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데이터에 관한 별도의 세원관리시스템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혹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리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세원관리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준모외. 2019.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구본승. 2019. 「데이터 경제 촉진의 매개체, 공공 주도의 오픈데이터 플랫폼」. 인터스트리 포커스 제74호. Deloitte Consulting.
- 김신언. 2020.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稅務와會計研究』 第9卷 第4號 : 10－17. 한국조세연구소.
- 김을식외. 2020. 「데이터 배당 및 세금에 관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법무부. 20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선지원. 2019.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6집 제2호 : 105－107.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동진. 2018.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 221－227.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 Gartner. 2011. 「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
- Guy Standing. 2017. 「The Corruption of Capitalism(Biteback Publishing)」. 한글판.
- MIT. 2016. 「The Rise of Data Capital」.
- Wikibon. 2018. 「Wikibon's 2018 Big Data Analytics Trends and Forecast」.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2441&cid=40942&categoryId=32840>(검색일 : 2020.04.04.).
- <https://terms.naver.com/list.naver?cid=42346&categoryId=42346>(검색일 : 2020.04.04.).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06399&memberNo=4795084&vType=VERTICAL>(검색일 : 2020.04.04.).
- <https://digital.go.kr/front/promotion/policyList.do>(검색일 : 2020.04.04.).

A Study on the Tax Measures of Data

Yoo Ho Lim*

〈Abstract〉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ack of a taxation system for ‘data’ that has strong excess revenue capacity and has virtually unlimited burden, as a new tax source that can guarantee Korea’s fiscal soundnes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data were examined, and analysis and theoretical review of related laws were conducted to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data retention tax’.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Basic Data Act, although data can create added value and have the nature of an asset that can be acquired, considering that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is omitted and cannot be taxed under the current tax law, Article 98 of the Civil Code proposed an amendment to include ‘collections of electronic information with added value’ or ‘data’ in the scope of objects. Next, the new data holding tax was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taxation and specific taxation plans by dividing the data taxation method into transaction taxation, holding tax, and income tax. Of course, if data is included in the scope of goods under the Civil Act, the data can be taxed as transaction tax such as value-added tax 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r income tax such as corporate tax or income tax. However, if data is taxed as transaction tax,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expense and tax cooperation cost increase excessively or the tax burden is passed on to the final consumer.

If it is taxed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not only technical limitations in extracting data-related taxable income, but also overlapping taxation problems with digital taxes that are agre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ternationally. It is thought that it is sufficiently possible to tax data as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a holding tax. When data is taxed as property tax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right to tax between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incomposibility, replication possibility, and combination possibility’ of data, and since most of the data with high economic added value is concentrated in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tax item called ‘data holding tax’ as national tax, but dis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tax revenue to local governments like the current local income tax (local corporate tax, local consumption tax) or transfer to a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r youth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 taxation equity between data businesses such as taxable platform companies and other general businesses, a plan was proposed to apply different tax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taxable data held or ability to generate profits, and the main business and data.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intangible, replicable, persistent, and combinable’ inherent in

* Professor,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Kangnam University, liuhulin@naver.com

the data and the enormous amount of taxable data, a plan w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separate tax source management system that can accurately check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In this case,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tax source management of foreign platform compani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or data collected while supplying electronic services without installing fixed businesses in Korea.

<Key words> data, data tax, platform tax, digital tax system, data holding tax